#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3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김원이・김주영・박지혜

정진욱 • 어기구 • 허종식

김교흥 • 진성준 • 김동아

박해철 · 장철민 · 송재봉

오세희 • 박홍배 • 추미애

남인순 · 김성환 의원

(179]

####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예산 책정과 지역주민 의견 수 렴 절차 등으로 미뤄봤을 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주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

호·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의로 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함(안 제1조).
- 나.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및 제6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지원위원회("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7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정 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 중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 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화력발전연

료의 제조 · 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5.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노동자와 석탄화력발전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 다.
- 6.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7. "신·재생에너지산업"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 로운 전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석 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후,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폐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경제적·사회 적 영향 관련 사항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협력에 관한 사항
-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 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시·도지사는 기본계

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4.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 ④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⑧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그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기술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의례) ① 「전기사업법」 제25 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폐지예정일 2년 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하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5.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용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

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 2.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3.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4. 대체산업 · 신 ·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홍보
-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7.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이 우수한 시·도지사에 대하여 다 른 시·도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 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